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78
----------	-----

2023년 3월 10일  
교육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6일, 이종배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3. 상정일자 :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
(2023년 3월 10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종배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문상의 “이용자” 를 “이용자 등” 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478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2조는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·시설의 ‘이용자’를 ‘이용자 등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「주차장법」에서는 부설주차장을 “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(제2조제1호다목)”<sup>1)</sup>으로 규정하고 있고,  
  
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교육청 등의 부설주차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물(從物)로서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의 이용·관리에 있어 실제 시설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인의 이용시 별도 규제를 하고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  
가. ~ 나. (생략)  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있지 않는바,

시설의 ‘이용자’ 를 ‘이용자 등’ 으로 하여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정의 상태에 대해 조례를 맞춰주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회신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20.,2023.2.13.)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**

**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이용자”를 “이용자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의)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<u>이용자</u>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용자 등</u>----- -----.</p>